

February 27, 2020

Legal Updat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

I. 서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구정 전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유의 수단으로 그 발원지인 후베이성(호북성)을 전면 봉쇄한데 이어 호북성 외의 기타 지역에서도 봉쇄 또는 봉쇄에 준하는 도시간 교통 통제, 인구 이동 제한, 모임 금지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방역조치의 단행 결과, 중국의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현재 많은 중국 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여파로 인해 중국 내 기업들의 경영악화 및 심각한 경우에는 도산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사태(이하 “이번 사태”)로 인한 위기감이 만연해 있고 이번 사태가 가닥이 잡히는 데는 앞으로도 한 동안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바, 한국기업의 중국 내 현지기업(이하 “현지기업”)은 물론, 중국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번 사태로 발생하거나 파생될 수 있는 중국 법 규정상 문제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의 국가 차원의 정책·규정과 현지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북경시(北京市),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의 상해시(上海市),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의 광주시(廣州市) 및 심천시(深圳市)의 지방성 정책·규정 및 기타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 기초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적 문제점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 뉴스레터에서 정리한 사항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 발생 시에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안 별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지기업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i) 인사노무 문제, (ii) 계약이행 문제, (iii) 생산·경영상 유의사항, (iv) 정부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 요지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지금도 중국에서는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수많은 정책·규정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신규 정책·규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책·규정의 변경 상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코로나19 사태 관련 영역별 유의사항

1. 인사노무 문제

현재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많은 현지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휴 연장, 업무 재개 지연 등 원인으로 현지기업들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인사노무 문제입니다(예컨대 이번 사태 기간 중의 급여 지급 문제, 노동계약 해지 문제,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 인정 여부 문제 등). 아래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주요한 인사노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사태 지속 기간 중 급여 지급 및 노동계약 해지 문제

구분	급여 지급 여부	노동계약 종료 가능 여부	유의/제안 사항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 폐렴환자,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로서 또는 정부 조치로 인하여 격리·의학관찰 받거나 근무제공이 어려운 경우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급여 지급 (근거규정: <노동관계 관련 통지>i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계약법>ii 제40조에 의한 비징계해고(이하 “비징계해고”) 또는 제41조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이하 “정리해고”)은 불가 격리기간 중 노동계약 만료 시 격리기간 종료시까지 노동계약이 연장 됨. (근거규정: <노동관계 관련 통지>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계약법> 제36조에 의한 합의 해지(이하 “합의해지”) 또는 제39조에 의한 징계해고(이하 “징계해고”)는 가능

1. 코로나19 감염 폐렴환자,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가 격리치료기간 또는 의학관찰기간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격리조치나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을 총칭하여 “격리기간”이라 함. 참고로, 북경시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중 1명이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기간을 정부에서 실시하는 격리조치나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구분	급여 지급 여부	노동계약 종료 가능 여부	유의/제안 사항
근로자가 격리기간 종료 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간 급여 지급 (근거규정: <생산회복 관련 의견>iii제3조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징계하고 또는 정리하고는 불가 의료기간 중 노동계약 만료 시 의료기간 종료시까지 노동계약이 연장 됨. (근거규정: <노동계약법> 제42조 및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해지 또는 징계해고는 가능 의료기간 급여는 노동계약 또는 단체계약의 약정에 따르되, 현지 최저 급여의 80%보다 높아야 함.
근로자가 근무제공이 어려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급여 지급주기: 정상급여 지급 둘째 급여 지급주기부터: 생활비² 지급 (근거규정: <생산회복 관련 의견> 제3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해지, 징계해고, 비징계해고, 정리해고 모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에 따른 연차사용, 재택근무 고려 가능
회사가 생산경영이 어려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급여 지급주기: 정상급여 지급 둘째 급여 지급주기부터: (i) 출근하여 정상 노동 제공 시 현지 최저 급여 기준보다 적지 않은 급여 지급, (ii) 출근하지 않아 정상 노동 미 제공 시 생활비 지급 (근거규정: <노동관계 관련 통지>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해지, 징계해고, 비징계해고, 정리해고 모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에 따른 연차사용, 감봉, 업무시간 감소, 교대근무 고려 가능

(2)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 인정 문제

구분	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³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전염병 발생 지역(무한시 등)에서 일하는 과정(출장 근무, 화물배송 등)에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산재로 인정 (근거규정: <광동성 산재보험조례>iv 제10조)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근무장소, 재택근무 기간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사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 및 관련 인원의 경우: 산재로 인정됨. 일반 근로자일 경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근거규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2020.02.22. 유권해석 제15조) 		

2. 지역별 생활비 지급 기준: (i) 북경시: ≥ 최저 급여기준의 70%; (ii) 상해시: 명확한 규정 없음; (iii) 광동성: ≥ 최저 급여기준의 80%.

3. 광주시와 심천시는 광동성 행정구역 내 주요 도시임.

유의/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근로자일 경우, 회사 요구에 따라 호복성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잠복기 등으로 인하여 입증상 어려운 문제도 있음). •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 규정의 사업 재개 및 사업 재개 시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	--

(3) 코로나19 사태 지속기간 중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의 납부 문제

구분	북경시	상해시	심천시	광둥성(광주시 포함)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태 지속 기간 중, 적시에 사회보험 등기 및 납부 등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개인권익기록⁴에 영향을 주지 않음. 단, 이번 사태 종료 후 3개월(생산·경영이 엄중하게 어려운 기업은 6개월) 내에 미 납부 사회보험료 보완 납부 필요함. •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회사유형⁵ 별로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하 총칭하여 “3항 보험”)의 회사납부 부분 감면 가능함. • (근거규정: <사회보험 관련 통지>^v 제5조, <사회보험료 감면 관련 통지>^{vi} 제1조~제3조) • 전술한 사회보험 관련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회사유형</th> <th style="width: 40%;">정책 내용</th> <th style="width: 30%;">감면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중·소·미형 기업(中小微企业)⁶</td> <td>3항 보험 회사납부 부분 면제</td> <td>≤ 5개월</td> </tr> <tr> <td>대형 기업 및 기타 기업</td> <td>3항 보험 회사납부 부분 50% 면제</td> <td>≤ 3개월</td> </tr> <tr> <td>호복성 소재 기업</td> <td>3항 보험 회사납부 부분 면제</td> <td>≤ 5개월</td> </tr> <tr> <td>모든 기업</td> <td>사회보험 연장 납부 가능</td> <td>≤ 3개월</td> </tr> <tr> <td>이번 사태로 생산경영이 엄중하게 어려운 기업</td> <td>사회보험 연장 납부 가능</td> <td>≤ 6개월</td> </tr> </tbody> </table>				회사유형	정책 내용	감면 기간	중·소·미형 기업(中小微企业) ⁶	3항 보험 회사납부 부분 면제	≤ 5개월	대형 기업 및 기타 기업	3항 보험 회사납부 부분 50% 면제	≤ 3개월	호복성 소재 기업	3항 보험 회사납부 부분 면제	≤ 5개월	모든 기업	사회보험 연장 납부 가능	≤ 3개월	이번 사태로 생산경영이 엄중하게 어려운 기업	사회보험 연장 납부 가능	≤ 6개월
회사유형	정책 내용	감면 기간																				
중·소·미형 기업(中小微企业) ⁶	3항 보험 회사납부 부분 면제	≤ 5개월																				
대형 기업 및 기타 기업	3항 보험 회사납부 부분 50% 면제	≤ 3개월																				
호복성 소재 기업	3항 보험 회사납부 부분 면제	≤ 5개월																				
모든 기업	사회보험 연장 납부 가능	≤ 3개월																				
이번 사태로 생산경영이 엄중하게 어려운 기업	사회보험 연장 납부 가능	≤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1월 및 2월 사회보험료의 납부기간을 일차적으로 3월까지 연장 • 일부 회사(이번 사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여행·요식·전시·교육 등 회사)의 경우, 관련 정부주무부서의 확인 하에 7월까지 연장 가능 • 생산경영이 어려우나 회복 가능성이 있고 감원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한 회사에 대해 직전 연도 6개월간 북경시 평균 실업보험료 기준 및 보험참가 근로자수에 따라 실업보험료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원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한 회사에 대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50% 반환 • 의료보험 회사 납부비용 0.5%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원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한 회사에 대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50% 반환 • 생산경영이 어려우면 서도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 회사에 대해 회사 및 근로자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원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한 회사에 대해 회사 및 근로자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50% 반환 																		

4. 보험참가근로자 및 회사의 사회보험의무이행 및 사회보험권익향유 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말함.
5. 회사유형은 근로자 수량, 영업소득, 자산총액 등 기준에 따라 구분됨.
6. 중국에서는 인원 규모,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하고, 중소기업을 종업원수·영업수입·자산총액 등 지표에 따라 중형기업·소형기업·미형기업으로 분류함. 예컨대, 공업(제조업이 이행 해당함)의 경우, 종업원수가 1,000명 이하 또는 영업수입이 40,0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중·소·미형 기업에 해당함(<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제2조, <중소기업유형구분기준규정>(中小微企业划型标准规定) 제4조).

구분	북경시	상해시	심천시	광둥성(광주시 포함)
주택공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사태 지속 기간 중 주택공적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기 납부 가능, 이번 사태 종료 후 적시에 보충 납부 필요 이때 보충 납부한 것도 연속 납부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사태 지속 기간 중 주택공적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비율을 최저 3%까지 인하하거나 연기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사태 지속 기간 중 주택공적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이번 사태 종료 후 3개월 내에 보충 납부 가능
유의/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한 연기 납부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있으나, 주택공적금의 경우 국가 차원의 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지역 별로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납부에 관한 정책이 있고,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소재지의 정책을 확인하여 적용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4) 기타

구분	내용
노동중재 시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당사자가 법정중재시효가 경과하도록 노동중재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시효는 중지되고, 이번 사태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중재시효가 중지된 시점에서 계속 계산됨. 이번 사태로 노동중재기구가 법에서 정해진 심사기한 내에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기한 연장 가능 (근거규정: <노동관계 관련 통지> 제3조)
외국인 비자, 거류증서 연장 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출입국 관리 법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인 비자, 거류증서가 기간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고, 계속 중국 경내에 거류하고자 할 경우公安국 출입국관리부서에서 비자, 거류증서의 연장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다만, 국가이민관리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적시에 중국에서 출국하기 어렵게 되었고 비자나 거류증서 연장 수속도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2. 계약이행 문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로 인하여, 많은 중국 내 기업들이 업무(생산) 재개 곤란, 원부자재 수급 차질, 교통 통제로 인한 납품 지연 등 계약 이행상 심각한 어려움이 겪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제반 경제활동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어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이 겹쳐 대금지급 지연 등 계약이행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태 종료 후 계약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중국 법 규정상 (i)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나 (ii) 계약해지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히 사전 및 사후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면책사유 (불가항력) 해당 여부	<p>(1) 중국 법 규정상 일반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이란 예측·회피·극복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상황(법규정에서 구체적 유형은 열거하지 않음)을 말함. • 일반적으로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과 전쟁·반란 등의 사유를 포함하며, 당사자 간 약정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거나 간주하는 기타 사건(예컨대, 파업 등)을 계약에서 추가로 약정할 수 있음. 다만, 불가항력은 법정 면책사유이므로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어도 적용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 이행이 불가할 경우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별도 법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한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책임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지연 이행 이후 불가항력 발생 시 책임을 면제할 수 없음. •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한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가항력에 관한 증명을 제공하여야 함. (근거규정: <민법총칙>^{vii} 제180조, <계약법>^{viii} 제94조, 제117조, 제118조 등) <p>(2) 불가항력 해당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태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 체결한 계약의 약정, 당사자가 이번 사태로 받은 영향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안 별로 판단하여야 함. • 가령 중국 정부 관계당국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명령 또는 행정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경우, 이는 기업으로서는 예측·회피·극복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상황에 해당되어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 다만, 기업이 합리적인 수단을 통하여 회피 또는 극복할 수 있거나, 계약 이행상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원가가 일부 인상되었다는 등의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 <p>(3) 불가항력 적용을 약정으로 제외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불가항력 적용을 배제하거나 “전염병 등”을 불가항력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 중국 최고법원의 해석 및 판례에 의하면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들의 책임감면에 관한 법정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음. 다만, 일부 지방법원의 판례 중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적정한 한도에서 당사자들의 책임비율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음.
계약해지 또는 변경 사유 (사정변경) 해당 여부	<p>(1) 중국 법 규정상 일반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성립 후 객관적인 상황에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非 불가항력으로 초래한 Business Risk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음. (근거규정: <계약법 사법해석(2)>^{ix} 제26조) <p>(2) 사정변경 해당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안 별로 판단하여야 함. • 가령 이번 사태가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수단을 통하여 회피 또는 극복이 가능하나 기존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임.

<p>시사점 및 제안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 관계당국의 기업에 대한 명령 또는 행정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임대 부동산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관련 계약서의 약정, 관련 계약의 이행에 대한 영향 정도, 관련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 정도,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하고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예컨대 임대계약의 경우 임대료를 일부 면제)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불가항력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주장해 볼 수도 있어 보이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중대할 경우 법원 또는 중재기관도 고통분담의 견지에서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필요 시 이러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음. 다만, 중국에서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의 적용에 대해서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사태로 발생하거나 파생된 모든 책임을 면제 받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이번 사태 종료 후 계약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추세에 대비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별도 <사법해석>(2003년 SARS 사태 때 유사한 사법해석을 발표한 적 있음)을 발표하여 법률 적용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관련 규정의 추이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계약이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제안사항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임대계약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수 지역에서 국유기업·집체기업 보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정책을 향유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ii) 이번 사태는 일반적으로 소송/중재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보수적인 견지에서 기존의 계약건에 있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지, 최고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할 필요가 있어 보임. (iii) 계약이행 상 어려움과 관련하여, 즉시 계약 상대방에 통지하고 대안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iv)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명령 또는 행정조치가 취소된 후 신속하게 계약 이행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v) 필요 시 CCPIT 등 관계당국/부서로부터 불가항력사실증명(단, 해당 증명 취득 시 반드시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등 이번 사태의 영향에 관한 증거자료를 발급 받아 보관할 필요가 있음. (vi) 이번 사태로 인하여 계약관계를 둘러싼 연쇄적 분쟁이 파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실 것을 제안 드리며, 협상으로 해결이 불가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소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적절한 시점에 소송·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	---

3. 생산·경영상 유의사항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중국 현지기업들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많은 지방 정부에서 업무 재개 관련 정책을 반포하였고,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심천시 등 호북성을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는 2020.02.10. 부터 업무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지역의 지방 정부에서는 일련의 지방성 정책·규정 내지 실무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반기업⁷들의 업무 재개와 정부 방역에 대한 협조상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경시의 경우 아직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해시와 광둥성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을 이미 발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규정은 비록 내용과 형식의 차이는 크지만 (i)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ii)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준비, (iii)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iv) 업무(생산) 재개 후의 보장조치 이행 등

7. 특수 업종(예컨대 방역 관련 업종, 민생 관련 업종, 도시 운행 및 생활필수품, 중점 프로젝트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을 말함.

요구사항이 큰 측면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각 지역별 정책·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제안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⁸
방역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기간의 긴급대처방안 마련 • 회사 주요 책임자 주도 하의 방역 관련 전문조직(TFT) 구성
방역 물품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손 세정제 소독제 체온계 등 개인방역물품 준비 및 배포.
노사분쟁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태 지속기간 중 급여, 휴가 등 원인으로 노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자를 배치 하여 관련 정책 규정 및 소재지 노동행정관리부서의 실무상 요구사항을 숙지 • (이번 사태 지속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계약 종료(해지)를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사분쟁을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노사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자제하고 가능한 노사 협상을 통해 노사갈등을 해결
보장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장소에 대한 정기적 소독 실시 • 의심환자 발생을 대비한 격리장소 마련 • 업무기간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확진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에게 14일간 격리 실시(요구)
직원 관리	<p>(1) 업무 복귀 적절성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복귀 전 동선(특히 호복성 경우 여부 및 호복성 인원 접촉 여부) 파악 및 기록 • 업무 복귀 전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 및 자가 격리 실시상황 기록 • 의심환자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에 보고 <p>(2) 체온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최소 1회 (출입 시 매번) 체온검사 실시 및 기록 • 발열증상 발견 시 업무 중단, 격리장소로 이동 요구(14일 자가 격리 또는 음성 판정 후 업무 복귀 허용) <p>(3) 직원에 대한 방역 관련 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규 Wechat 이메일 통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염병 방역 관련 교육 실시 • 관련 교육기록에 직원이 서명하도록 하여 보관 <p>(4) 직원 밀집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허용 시, 탄력근무제 실시하고 출퇴근시간 러시아워를 피면 • 현장 미팅을 줄이고, 현장 미팅 출석인원 최소화 <p>(5) 업무장소 출입 및 외근, 출장 최소화</p>

이번 사태가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영업 중단 내지 경우에 따라 행정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지기업(특히 생산기업)은 안전한 차원에서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이나 주변 기업으로부터 업무(생산) 재개에 필요한 신고 등 (규정상 또는 사실상의) 사전 절차가 있는지 여부⁹, 업무(생산)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요구 또는

8.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 또는 주변 유사기업으로부터 요구사항이나 실행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샘플(양식)을 입수하여 참고 할 수도 있을 것임.

9. 상해시와 광동성의 경우 업무(생산) 재개를 위해 사전 신고(비안)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안내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되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에서 실시하는 방역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4. 정부 지원정책 및 기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강력한 방역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중국은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일련의 정책·규정을 발표하고, (i) 세금 납부(신고)기한 연장, (ii) 세금·공과금 감면, (iii) 대출지원 정책, (iv) 임대료 지원 등 일련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부 주요 지원정책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규정 별로 적용대상이 다르고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원론적인 규정 위주이고 신청, 승인 및 지원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구체적인 규정 또는 실무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추가 지원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래에서 정리한 내용(일부 정책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후속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전망도 있음)은 참고하시되 실제로 향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업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적극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세금 납부(신고)기한 연장 관련

구분	전국	북경시	상해시	광둥성		
				광주시	심천시	
적용 대상	• 중국 전역 월별 신고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 전염병 사태 영향으로 납세신고가 어려운 중·소·미형 기업	• 전염병 사태 영향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기납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	/	• 생산경영이 어렵고 연기납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연장 기한	• 2020년 2월 납세신고기한을 2020.2.28.까지 연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 전염병 사태 영향으로 2020.02.28.까지 신고하지 못한 기업은 서면으로 정당 사유 설명 후 연장 신고 수속 보완 가능 • 호복성 기업: 별도 규정에 따름	≤ 3개월	≤ 3개월	/	/	≤ 3개월
비고	• 연기 신고(납부)한 경우 체납금 등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납세 관련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으며 비정상 납세자로 불인정.					

(2) 세금·공과금 감면 관련

구분	전국	북경시	상해시	광둥성		
				광주시	심천시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불황 기업(교통운송·요식·숙박·여행 포함) 중 2020년도 주요 업무의 수입이 수입 총액(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은 제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중·소·미형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임차인을 위해 건물 또는 토지의 임대료를 감면한 기업과 ②건물 또는 토지가 정부에 의해 긴급 징용된 기업으로서 세금 납부가 확실히 어려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세금 납부가 확실히 어려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생산경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기업으로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사태 영향으로 어려운 기업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의 이월가능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종설비 검사비, 오수처리비, 도로점용비용의 징수를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산세, 성진토지 사용세의 감면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산세, 성진토지사 용세를 적절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 감면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의 성진 오수처리비 반환 모든 기업 2월달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 면제 3개월의 방산세, 성진토지 사용세 면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한 바를 제외하고 기타 세금·공과금 감면 정책이 있을 수 있음. 단 관련 정책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대출지원 관련

구분	전국	북경시	상해시	광둥성		
				광주시	심천시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 만기도래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 만기도래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중·소·미형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업종 및 중·소·미형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방역 관련 기업 및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의 사태의 영향을 받은 중·소·미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기업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 인하 신용대출 증가 역담보 취소 담보비용 감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기한 연장 이자 보조금 지급 담보비용 감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율 인하 신용대출 증가 담보비용 감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 인하 수수료 감면 연체이자 면제 담보비용 감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율 인하 역담보 취소 담보비용 면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기한 연장 신용대출 증가 이자 보조금 지급 담보비용 감소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출지원 정책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필요 시 지원 가부 및 실제 지원 정도는 거래은행에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음. 					

(4) 임대료지원 관련

구분	전국	북경시	상해시	광둥성		
				광주시	심천시	
적용 대상	/	• 국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영업 또는 영업을 중단하되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 중·소·미형 기업	• 국유기업의 경영성 부동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 국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전염병 사태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기업(국유기업 제외)	• 국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오프라인매장을 운영하는 중·소·미형 기업	• 국유 부동산을 임차한 기업(국유기업 제외)
지원 내용	/	• 2020년 2월 임대료 100% 면제 (오피스는 50% 면제)	• 2020년 2월, 3월 임대료 면제	• 1개월 전부 면제, 2개월 50% 면제	• 2020년 2월, 3월 임대료 감면	• 2개월 임대료 면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책에서는 국유기업 외 기타 소유주가 임대료를 적극 감면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일부 구(현) 정부에서는 집체기업도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감면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부동산 세금 감면 등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 필요 시 임대료 면제 가능 여부는 건물 소유주,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에 실무적으로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음. 					

III. 시사점

현재 중국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많은 정책·규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현지기업들은 중국 및 소재지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실 것을 제안 드리고, 가령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안 또한 전형적이지 않거나 복잡할 경우,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에 실무적으로 확인하여 보시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사전 문의하여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중국 현지기업들은 위에서 설명 드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유의사항에 유념해야 하는 외에, 국가 및 소재지 지방 정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실 것을 제안 드리고, 필요 시 관련 지원 정책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에 조속히 신청하고 생산, 경영상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후베이성(호북성)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업무를 재개하고 있는데, 업무재개를 위해 (i)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ii)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준비, (iii) 직원에 대한 검사, (iv) 업무(생산) 재개 신청 등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에서 실시하는 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현지기업들은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근로자 보호 등 이번 사태의 종식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국의 관련 정책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인바, 이러한 준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번 사태가 종료된 이후 다시 분쟁으로 비화되거나 정부

관계당국으로부터의 행정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i. 근거규정 전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방역기간 노동관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반공청의 통지>(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
 - ii. 근거규정 전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iii. 근거규정 전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방역기간 노동관계를 안정화하고 기업의 생산 회복을 지원할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중국기업가협회, 전국공상련의 의견>(人力资源社会保障部、全国总工会、中国企业联合会/中国企业家协会、全国工商联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复工复产的意见)
 - iv. 근거규정 전칭: <광둥성 공상보험조례>(广东省工伤保险条例)
 - v. 근거규정 전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방역기간 사회보험 업무를 착실히 잘할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반공청의 통지>(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切实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社会保险经办工作的通知)
 - vi. 근거규정 전칭: <단계적으로 기업 사회보험료를 감면할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통지>(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税务总局关于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的通知)
 - vii. 근거규정 전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viii. 근거규정 전칭: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ix. 근거규정 전칭: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2)>[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원중재
파트너변호사

+86-10-8447-5349

jjwon@shinkim.com



장대훈
중국 변호사

+86-10-8447-5343

dxzha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